

의안번호	2204177
의 퇴 인	권성동 의원
회 답 일	2024. 11. 8.
추 계 번호	24F387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과 상속공제 인상 등 －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상속세 세율 및 일괄공제 등을 조정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는 2025년 3조 7,765억원, 2029년 5조 9,678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27조 6,477억원(연평균 5조 5,29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요건 완화, 배우자상속공제액(일괄) 상향조정, 상속세 공제 적용 한도액 산정 시 적용할 상속세 과세가액 상향조정,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료 등의 부재로 추계가 불가능함
 - 이를 고려할 경우 전체적인 재정수입 감소는 제시된 금액과 다를 수 있음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상속세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요건 완화 (안 제18조의2제1항)		추	정	곤	란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일괄) 상향조정 (안 제19조제4항)		추	정	곤	란		
상속세 세율 조정 (안 제26조)	-32,053	-48,254	-48,254	-48,254	-48,254	-225,070	-45,014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조정 (안 제21조제1항)	-5,712	-11,424	-11,424	-11,424	-11,424	-51,408	-10,282
상속세 공제 적용 한도액 산정 시 적용할 상속세 과세가액 상 향조정(안 제24조 단서)		추	정	곤	란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 지(안 제63조 제3항 삭제)		추	정	곤	란		
합 계	-37,765	-59,678	-59,678	-59,678	-59,678	-276,477	-55,295

주: 1. 현행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 세율을 준용하도록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되어 있어 상속세 세율 조정 시 증여세도 자동적으로 연동

2. 2025년 세수효과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 반영하여 상속세 6/12, 증여세 9/12 적용하여 산정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8조의2제1항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적용요건 완화 － 피상속인 가업영위기간: (현행) 10년 → (개정안) 5년																											
2	안 제19조제4항(배우자상속공제: 일괄)	○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일괄) 상향조정 － 배우자상속공제액(일괄): (현행) 5억원 → (개정안) 12억원																											
3	안 제21조제1항(일괄공제)	○ 상속세 일괄공제액 상향조정 － 일괄공제액: (현행) 5억원 → (개정안) 10억원																											
4	안 제24조 단서(공제 적용의 한도)	○ 상속세 공제 적용 한도액 산정시 적용할 상속세 과세가액의 상향조정 － 상속세 과세가액: (현행) 5억원 초과 → (개정안) 10억원 초과																											
5	안 제26조(상속세 세율)	<table><tr><th>과세표준</th><th>세율</th><th></th><th>과세표준</th><th>세율</th></tr><tr><td>~ 1억원 이하</td><td>10%</td><td rowspan="5">→</td><td>~ 1억원 이하</td><td>5%</td></tr><tr><td>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td><td>20%</td><td>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td><td>10%</td></tr><tr><td>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td><td>30%</td><td>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td><td>20%</td></tr><tr><td>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td><td>40%</td><td>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td><td>30%</td></tr><tr><td>30억초과 ~</td><td>50%</td><td>30억초과 ~</td><td>40%</td></tr></table>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 1억원 이하	10%	→	~ 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2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30%	30억초과 ~	50%	30억초과 ~	40%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 1억원 이하	10%	→	~ 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2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30%																									
30억초과 ~	50%		30억초과 ~	40%																									
6	안 제28조제1항(증여세액공제)	○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속세 과세가액 상향조정 －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속세 과세가액: (현행) 5억원 이하 → (개정안) 10억원 이하	다만, 개정안에 따라 일괄공제 상향조정 시 상속세의 세수변화가 없음																										
7	안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등의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평가액의 20% 가산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8조의2제1항(가업상속 공제)	×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9조제4항(배우자상속공제: 일괄)	×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안 제21조제1항(일괄공제)	○	
4	안 제24조 단서(공제 적용의 한도)	×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5	안 제26조(상속세 세율)	○	○
6	안 제28조제1항(증여세액공제)	×	○ 개정안에 따라 일괄공제 상향조정이 이루어진다고 가정 － 개정안에 따라 일괄공제가 상향조정되는 경우 상속세의 세수 변화가 없음
7	안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은 2024년 국회에서 심의·의결되어 2025년부터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세수효과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
- 2025년 세수효과는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 및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을 감안하여 상속세 6개월분·증여세 9개월분 반영

-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 향후 상속세 세율 조정조정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다음과 같은 가정으로 추계

- 향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 가정
 - 상속세 과세대상 피상속인수는 최근 5년간 전체 피상속인수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과세가 된 피상속인수의 연평균 비중(4.0%)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대상 피상속인(13,398명)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건수는 최근 5년간(특이치 제외) 전체 증여건수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과세된 증여건수의 연평균 비중(40.5%)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대상 증여건수(187,969건)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향후 상속 및 증여재산규모의 과세표준별 과세대상자 가정
 - 상속 및 증여재산규모 과세표준별 과세대상자는 최근 5년간 상속재산규모 과세표준별 과세대상자 비중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과세대상 연평균 비중으로 가정
- 향후 상속 및 증여재산규모별 1인당 과세표준액 가정
 - 최근 5년간 상속 및 증여재산규모별 1인당 과세표준액의 증감이 일정하지 않아 각 규모별 평균 과세표준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향후 상속 및 증여재산규모별 1인당 세액공제액 가정
 - 상속세의 세액공제는 증여세액공제(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의 기납부증여세) 및 신고세액공제만 발생한다고 가정
 - * 증여세액공제는 상속재산규모별 최근 5년간 1인당 증여세액공제세액(증여세액공제액/건수) 연평균 공제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 신고세액공제는 추정된 1인당 산출세액과 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값에 공제율(3%)을 적용하여 산정한 공제액으로 가정하며, 이는 세수효과 추정시 직접 적용
 - *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및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대상자가 매우 미미하여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
 - 증여세의 세액공제는 납부세액공제(증여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기납부증여세) 및 신고세액공제만 발생한다고 가정
 - * 납부세액공제는 증여재산규모별 최근 5년간 1인당 납부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공제액/건수) 연평균 공제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¹⁾
 - * 신고세액공제는 추정된 1인당 산출세액과 세액공제 등을 반영한 값에 공제율(3%)

1) 증여세 납부세액공제는 수증자가 10년전 받은 증여재산까지 증여자산에 합산하여 과세하면서 증여 당시 부담한 기납부 증여세액에 대한 공제로, 향후 세율 조정에 따라 납부세액 역시 변화가 예상되나 이는 법 개정 이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반영되므로 본 추계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음

을 적용하여 산정한 공제액으로 가정하며, 이는 세수효과 추정시 직접 적용
*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대상자가 매우 미미하여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

□ 향후 상속세 일괄공제액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다음과 같은 가정으로 추계

- 일괄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는 최근 5년간 전체 과세대상 피상속인수에서 일괄공제 적용대상 연평균 비율(93.3%)을 반영하여 추정한 피상속인수가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일괄공제액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 감소액 추정시 적용할 실효세율은 기초상속세 총결정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나눈 값으로 추정하며,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규모별 평균 실효세율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이외에도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 적용요건 완화, 배우자상속공제(일괄) 조정과 상속세 공제 적용 한도액 산정시 적용할 상속세 과세가액 상향 조정,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동 추계에서 제외함

- 향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은 일정기간 가업을 영위(현행 10년, 개정안 5년)해야 동 공제를 적용하며, 이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피상속인의 가업영위 기간과 가업상속재산가액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추계가 불가능함
- 향후 상속세 배우자상속공제(일괄)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개정안 12억원)을 적용하며, 이 경우 피상속인 배우자의 재산상속 여부 및 상속재산 가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추계가 불가능함
- 향후 상속세 공제 적용 한도액 산정시 적용할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액의 일정금액을 초과(현행 5억원 초과, 개정안 10억원 초과)한 경우 적용하며, 이 경우 피상속인별 상속공제액 및 유증 등 상속재산 차감 항목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추계가 불가능함

* 상속세 공제 적용 한도액은 상속공제할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

가액을 차감하여 산정

- 상속세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속세 과세가액 상향조정(현행 5억원 이하, 개정안 10억원 이하)은 동 개정안에 따라 일괄공제가 상향조정되는 경우 상속세 증감 없음
-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의 할증폐지는 상속 및 증여하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 비율 및 가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추계가 불가능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상속세 세율 조정

(1) 제도개요

- 현행 상속세 세율은 1억원 이하 10%에서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
 - 현행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 세율을 준용하도록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되어 있어 상속세 세율 조정 시 증여세도 자동으로 연동
 - 개정안에 따른 조정사항

[표 2] 상속세 현행 세율 및 개정안 비교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 1억원 이하	10%	~ 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1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2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30%
30억원 초과 ~	50%	30억원 초과 ~	40%

(2) 추계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조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자 수를 추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상속 및 증여재산규모별 1인당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세율조정안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세수효과 추계
 -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자수는 최근 5년간 전체 피상속인수 및 증여자

가운데 과세 피상속인수 및 증여자의 연평균 비중을 적용하여 산정

- 상속 및 증여재산규모별 1인당 과세표준에 세율조정안을 반영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세액공제액을 반영하여 결정세액 산정
- 1인당 결정세액에 상속 및 증여재산규모별 과세대상자 수를 반영하여 세수효과 추정

(가) 과세대상자

- 상속세 과세대상 피상속인수는 최근 5년간 전체 피상속인수(연평균 336,365명) 중 과세가 된 피상속인수의 연평균 비중(4.0%)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대상 피상속인(13,398명)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계
 - 최근 5년간 전체 피상속인수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향후 과세대상 피상속인수의 증감추세도 일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연평균 비중(4.0%) 적용

[표 3] 최근 5년간 과세대상 피상속인수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피상속인수	과세 피상속인수	과세미달 피상속인수
2019년	345,290 (100.0)	8,357 (2.4)	336,933 (97.6)
2020년	351,648 (100.0)	10,181 (2.9)	341,467 (97.1)
2021년	344,184 (100.0)	12,749 (3.7)	331,435 (96.3)
2022년	348,159 (100.0)	15,760 (4.5)	332,399 (95.5)
2023년	292,545 (100.0)	19,944 (6.8)	272,601 (93.2)
연평균인원 / 연평균 비중 인원 등	336,365 (100.0)	13,398 (4.0)	322,967 (96.0)

주: ()는 전체 피상속인수 대비 비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건수는 최근 5년간(특이치 제외) 전체 증여건수(연평균 464,034건) 중 과세된 증여건수의 연평균 비중(40.5%)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대상 증여건수(187,969건)가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계
 - 최근 5년간 전체 증여건수의 증감추세는 일정하지 않으며, 2021년 및 2022년 특이치를 제외한 3년간의 과세된 증여건수의 연평균 비중(40.5) 적용

[표 4] 최근 5년간 과세대상 증여건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전체 증여건수	과세 증여건수	과세미달 증여건수
2019년	400,299 (100.0)	169,911 (42.4)	230,388 (57.6)
2020년	461,800 (100.0)	183,499 (39.7)	278,301 (60.3)
2021년	800,109 (100.0)	275,592 (34.4)	524,517 (65.6)
2022년	711,875 (100.0)	252,412 (35.5)	459,463 (64.5)
2023년	530,004 (100.0)	208,508 (39.3)	321,496 (60.7)
연평균인원 / 연평균 비중 인원 등	464,034 (100.0)	187,969 (40.5)	276,066 (59.5)

주: 1. ()는 전체 증여건수 대비 비율

2. 2021년 및 2022년 특이치 제외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상속 및 증여재산규모 과세표준별 과세대상자

- 상속재산규모 과세표준별 과세대상자는 전체 추정 과세대상자(13,398명)에 최근 5년간 상속재산규모 과세표준별 과세대상 연평균 비중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계

[표 5] 상속재산규모 과세표준별 최근 5년간 피상속인수 현황 및 향후 과세대상 추정

(단위: 명, %)

총상속재산 과세가액 규모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비율	과세대상 추정
1억원 이하	59 (0.71)	63 (0.62)	72 (0.56)	57 (0.36)	84 (0.42)	0.53	72
5억원 이하	339 (4.06)	376 (3.69)	409 (3.21)	426 (2.70)	551 (2.76)	3.28	440
10억원 이하	1,986 (23.76)	2,687 (26.39)	3,202 (25.12)	4,018 (25.49)	5,026 (25.20)	25.19	3,375
30억원 이하	4,706 (56.31)	5,619 (55.19)	7,219 (56.62)	8,955 (56.82)	11,066 (55.49)	56.09	7,514
50억원 이하	706 (8.45)	774 (7.60)	1,036 (8.13)	1,289 (8.18)	1,928 (9.67)	8.40	1,126
100억원 이하	389 (4.65)	449 (4.41)	532 (4.17)	677 (4.30)	850 (4.26)	4.36	584
500억원 이하	160 (1.91)	198 (1.94)	256 (2.01)	312 (1.98)	402 (2.02)	1.97	264
1,000억원 이하	7 (0.08)	9 (0.09)	14 (0.11)	15 (0.10)	22 (0.11)	0.10	13
1,000억원 초과	5 (0.06)	6 (0.06)	9 (0.07)	11 (0.07)	15 (0.08)	0.07	9
합계/향후 추정 과세대상	8,357 (100.00)	10,181 (100.00)	12,749 (100.00)	15,760 (100.00)	19,944 (100.00)	100.00	13,398

주: 1. ()는 전체 피상속인수 대비 비율

2. 과세대상 추정은 향후 전체 과세대상에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자료: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증여재산규모 과세표준별 과세대상은 추정 과세대상 (187,969건)에 최근 5년간 증여재산규모 과세표준별 과세대상 연평균 비중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계

[표 6] 증여재산규모 과세표준별 최근 5년간 증여건수 현황 및 향후 과세대상 추정
(단위: 건, %)

총상속재산 과세가액 규모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비율	과세대상 추정
1억원 이하	90,149 (53.06)	97,369 (53.06)	136,135 (49.38)	135,330 (53.58)	113,868 (54.61)	52.74	99,150
5억원 이하	60,745 (35.75)	65,488 (35.69)	103,479 (37.53)	89,258 (35.34)	71,746 (34.41)	35.74	67,202
10억원 이하	12,890 (7.59)	14,344 (7.82)	25,979 (9.42)	19,157 (7.58)	15,842 (7.60)	8.00	15,044
30억원 이하	4,899 (2.88)	5,179 (2.82)	8,409 (3.05)	7,242 (2.87)	5,760 (2.76)	2.88	5,409
50억원 이하	540 (0.32)	469 (0.26)	644 (0.23)	695 (0.28)	626 (0.30)	0.28	520
100억원 이하	321 (0.19)	350 (0.19)	420 (0.15)	543 (0.21)	368 (0.18)	0.18	321
500억원 이하	311 (0.18)	253 (0.14)	526 (0.19)	322 (0.13)	256 (0.12)	0.15	272
1,000억원 이하	16 (0.01)	17 (0.01)	83 (0.03)	24 (0.01)	13 (0.01)	0.01	24
1,000억원 초과	40 (0.02)	30 (0.02)	25 (0.01)	18 (0.01)	29 (0.01)	0.01	26
합계/향후 추정 과세대상	169,911 (100.00)	183,499 (100.00)	275,592 (100.00)	252,412 (100.00)	208,508 (100.00)	100.00	187,969

주: 1. ()는 전체 증여건수 대비 비율

2. 과세대상 추정은 향후 전체 과세대상에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자료: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상속 및 증여재산규모별 1인당 과세표준 가액

- 최근 5년간 상속재산규모별 1인당 과세표준액의 증감이 일정하지 않아 각 상속재산규모별 1인당 평균 과세표준액 1억원 이하 0.4억원에서 1,000억원 초과 4,683.1억원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계

[표 7] 상속재산규모별 1인당 과세표준액 추정

(단위: 명, 억원)

상속재산 과세 가액규모	2019			2020			2021			2022			2023			1인당 평균 과세표준
	피상속 인수	과세 표준	1인당 과세표준	피상속 인수	과세 표준	1인당 과세표준	피상속 인수	과세 표준	1인당 과세표준	피상속 인수	과세 표준	1인당 과세표준	피상속 인수	과세 표준	1인당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9	20	0.3	63	23	0.4	72	27	0.4	57	21	0.4	84	31	0.4	0.4
5억원 이하	339	557	1.6	376	587	1.6	409	661	1.6	426	722	1.7	551	953	1.7	1.6
10억원 이하	1,986	4,180	2.1	2,687	5,187	1.9	3,202	6,403	2.0	4,018	8,051	2.0	5,026	9,764	1.9	2.0
30억원 이하	4,706	27,219	5.8	5,619	31,253	5.6	7,219	41,572	5.8	8,955	41,572	4.6	11,066	64,051	5.8	5.5
50억원 이하	706	13,070	18.5	774	14,245	18.4	1,036	19,937	19.2	1,289	75,583	58.6	1,928	37,056	19.2	26.8
100억원 이하	389	15,421	39.6	449	17,290	38.5	532	21,070	39.6	677	26,975	39.8	850	33,984	40.0	39.5
500억원 이하	160	18,835	117.7	198	26,036	131.5	256	33,592	131.2	312	38,323	122.8	402	51,370	127.8	126.2
1,000억 원 이하	7	2,737	391.0	9	5,228	580.9	14	7,420	530.0	15	8,337	555.8	22	12,860	584.5	528.4
1,000억 원 초과	5	14,045	2,809.0	6	27,875	4,645.9	9	23,846	2,649.6	11	35,948	2,813.4	15	129,421	8,628.1	4,683.1 ^{추계}

주: 1. 1인당 과세표준액은 각 과세규모별 상속과세표준액을 피상속인수로 나눈 값

2. 1,000억원 초과 1인당 과세표준액은 2022년 특이치를 제외하고 산정

자료: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최근 5년간 증여재산규모별 1건당 과세표준액의 증감이 일정하지 않아 증여재산규모별 1건당 평균 과세표준액 1억원 이하 0.3억원에서 1,000억원 초과 1,989.9억원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계

[표 8] 증여재산규모별 1건당 과세표준액 추정

(단위: 건, 억원)

증여재산 과세 가액규모	2019			2020			2021			2022			2023			1건당 평균 과세표준
	증여 건수	과세 표준	건당 과세표준	증여 건수	과세 표준	건당 과세표준	증여 건수	과세 표준	건당 과세표준	증여 건수	과세 표준	건당 과세표준	증여 건수	과세 표준	건당 과세표준	
1억원 이하	90,149	23,071	0.3	97,369	25,279	0.3	136,135	36,166	0.3	135,330	36,215	0.3	113,868	29,493	0.3	0.3
5억원 이하	60,745	98,835	1.6	65,488	105,981	1.6	103,479	173,522	1.7	89,258	152,346	1.7	71,746	123,038	1.7	1.7
10억원 이하	12,890	58,969	4.6	14,344	62,696	4.4	25,979	117,664	4.5	19,157	91,994	4.8	15,842	72,963	4.6	4.6
30억원 이하	4,899	64,263	13.1	5,179	68,239	13.2	8,409	105,997	12.6	7,242	96,268	13.3	5,760	76,490	13.3	13.1
50억원 이하	540	18,729	34.7	469	16,019	34.2	644	22,805	35.4	695	24,684	35.5	626	21,601	34.5	34.9
100억원 이하	321	21,163	65.9	350	23,998	68.6	420	29,570	70.4	366	23,953	65.4	368	24,804	67.4	63.3
500억원 이하	311	70,007	225.1	253	48,217	190.6	418	89,572	214.3	322	69,651	216.3	256	50,910	198.9	200.2
1,000억 원 이하	16	10,837	677.3	17	12,297	723.4	83	51,963	626.1	24	17,023	709.3	13	9,124	701.8	687.6
1,000억 원 초과	40	77,500	1,937.5	30	61,235	2041.2	25	50,627	2025.1	18	39,065	2,170.3	29	51,486	1,775.4	1,989.9

주: 1인당 과세표준액은 각 과세규모별 증여과세표준액을 증여건수로 나눈 값

자료: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상속 및 증여재산별 1인당 세액공제액

① 상속세의 증여세액공제액

- 상속재산규모별 1건당 증여세액공제액은 1억원 이하 3백만원에서 1,000억원 초과 212억원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계
 ○ 증여세액공제액은 상속재산규모별 전체 과세대상자 가운데 증여세액공제액을 적용받은 비중을 반영하여 추계

[표 9] 상속재산규모별 1건당 증여세액공제액 추정

(단위: 건, 억원, %)

상속재산 과세 가액규모	2019			2020			2021			2022			2023			1건당 평균 공제액
	건수	공제액	1건당 공제액	건수	공제액	1건당 공제액	건수	공제액	1건당 공제액	건수	공제액	1건당 공제액	건수	공제액	1건당 공제액	
1억원 이하	10	0.3	0.03	27	0.7	0.026	20	0.7	0.03	20	0.6	0.03	41	1.5	0.036	0.03
5억원 이하	172	24.5	0.14	201	26.8	0.13	205	30.8	0.15	222	37.5	0.17	267	43.0	0.16	0.15
10억원 이하	838	242.9	0.3	927	270.1	0.3	1,023	309.0	0.3	1,104	301.8	0.3	1,430	414.5	0.3	0.3
30억원 이하	1,833	1,007.0	0.5	2,123	1,119.1	0.5	2,407	1,342.3	0.6	2,645	1,335.1	0.5	3,407	1,888.3	0.6	0.5
50억원 이하	387	494.8	1.3	447	566.4	1.3	582	797.8	1.4	676	898.1	1.3	1,029	1,219.5	1.2	1.3
100억원 이하	291	694.6	2.4	323	893.4	2.8	366	747.8	2.0	453	1,143.3	2.5	575	1,418.0	2.5	2.4
500억원 이하	129	1,264.0	9.8	157	1,398.5	8.9	208	1,681.4	8.1	231	1,899.3	8.2	304	2,706.8	8.9	8.8
1,000억 원 이하	7	111.0	15.9	8	257.7	32.2	11	641.6	58.3	11	418.3	38.0	18	669.2	37.2	36.3
1,000억 원 초과	5	2,014.5	402.9	6	511.7	85.3	8	1,031.0	128.9	11	3,204.7	291.3	15	2,272.2	151.5	212.0

주: 1인당 증여세액공제액은 각 과세규모별 증여세액공제 적용자를 전체 과세대상자로 나눈 값
 자료: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10] 상속재산규모별 증여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율

(단위: 건, %)

상속재산 과세 가액규모	2019			2020			2021			2022			2023			증여공제 적용비중
	전체 과세대상	공제 대상	비중	전체 과세대상	공제 대상	비중	전체 과세대상	공제 대상	비중	전체 과세대상	공제 대상	비중	전체 과세대상	공제 대상	비중	
1억원 이하	59	10	16.9	63	27	42.9	72	20	27.8	57	20	35.1	84	41	48.8	34.3
5억원 이하	339	172	50.7	376	201	53.5	409	205	50.1	426	222	52.1	551	267	48.5	51.0
10억원 이하	1,986	838	42.2	2,687	927	34.5	3,202	1,023	31.9	4,018	1,104	27.5	5,026	1,430	28.5	32.9
30억원 이하	4,706	1,833	39.0	5,619	2,123	37.8	7,219	2,407	33.3	8,955	2,645	29.5	11,066	3,407	30.8	34.1
50억원 이하	706	387	54.8	774	447	57.8	1,036	582	56.2	1,289	676	52.4	1,928	1,029	53.4	54.9
100억원 이하	389	291	74.8	449	323	71.9	532	366	68.8	677	453	66.9	850	575	67.6	70.0
500억원 이하	160	129	80.6	198	157	79.3	256	208	81.3	312	231	74.0	402	304	75.6	78.2
1,000억 원 이하	7	7	100.0	9	8	88.9	14	11	78.6	15	11	73.3	22	18	81.8	84.5
1,000억 원 초과	5	5	100.0	6	6	100.0	9	8	88.9	11	11	100.0	15	15	100.0	97.8

주: 1인당 증여세액공제 적용비율은 각 과세규모별 증여세액공제 적용자를 전체 과세대상자로 나눈 값

자료: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② 증여세의 납부세액공제액

- 증여재산규모별 1건당 납부세액공제액은 1억원 이하 2백만원에서 1,000억원 초과 849.2억원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에 추계
- 납부세액공제액은 증여재산규모별 전체 과세대상자 가운데 납부세액공제액을 적용받은 비중을 반영하여 추계

[표 11] 증여재산규모별 1건당 납부세액공제액 추정

(단위: 건, 억원, %)

증여재산 과세 가액규모	2019			2020			2021			2022			2023			1건당 평균 공제액
	건수	공제액	1건당 공제액	건수	공제액	1건당 공제액	건수	공제액	1건당 공제액	건수	공제액	1건당 공제액	건수	공제액	1건당 공제액	
1억원 이하	6,983	168	0.02	7,846	193	0.03	10,225	247	0.02	11,597	266	0.02	12,055	275	0.02	0.02
5억원 이하	14,290	2,508	0.2	15,439	2,754	0.2	20,594	3,375	0.2	20,746	3,350	0.2	18,999	3,281	0.2	0.2
10억원 이하	4,587	3,224	0.7	4,867	3,217	0.7	7,516	4,813	0.6	6,560	4,212	0.6	5,868	3,926	0.7	0.7
30억원 이하	2,966	7,916	2.7	3,154	9,116	2.9	4,298	9,417	2.2	4,049	9,888	2.4	3,409	8,474	2.5	2.5
50억원 이하	400	3,594	9.0	319	2,476	7.8	495	3,771	7.6	508	4,389	8.6	481	4,338	9.0	8.4
100억원 이하	265	5,547	20.9	284	6,333	22.3	337	7,123	21.1	270	4,535	16.8	292	5,593	19.2	20.1
500억원 이하	284	27,467	96.7	225	16,988	75.5	401	34,972	87.2	267	20,007	74.9	227	15,652	69.0	80.7
1,000억 원 이하	15	3,363	224.2	16	5,249	328.1	81	23,373	288.6	23	5,215	226.7	9	2,841	315.6	276.6
1,000억 원 초과	39	34,473	883.9	29	25,421	876.6	25	20,477	819.1	18	16,569	920.5	28	20,882	745.8	849.2

주: 1인당 증여세액공제액은 각 과세규모별 증여세액공제 적용자를 전체 과세대상자로 나눈 값
자료: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12] 증여재산규모별 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율

(단위: 건, %)

증여재산 과세 가액규모	2019			2020			2021			2022			2023			납부세액 공제적용 비율
	전체 과세대상	공제 대상	비율	전체 과세대상	공제 대상	비율	전체 과세대상	공제 대상	비율	전체 과세대상	공제 대상	비율	전체 과세대상	공제 대상	비율	
1억원 이하	90,149	6,983	7.7	97,369	7,846	8.1	136,135	10,225	7.5	135,330	11,597	8.6	113,868	12,055	10.6	8.5
5억원 이하	60,745	14,290	23.5	65,488	15,439	23.6	103,479	20,594	19.9	89,258	20,746	23.2	71,746	18,999	26.5	23.3
10억원 이하	12,890	4,587	35.6	14,344	4,867	33.9	25,979	7,516	28.9	19,157	6,560	34.2	15,842	5,868	37.0	33.9
30억원 이하	4,899	2,966	60.5	5,179	3,154	60.9	8,409	4,298	51.1	7,242	4,049	55.9	5,760	3,409	59.2	57.5
50억원 이하	540	400	74.1	469	319	68.0	644	495	76.9	695	508	73.1	626	481	76.8	73.8
100억원 이하	321	265	82.6	350	284	81.1	420	337	80.2	366	270	73.8	368	292	79.3	74.6
500억원 이하	311	284	91.3	253	225	88.9	418	401	95.9	322	267	82.9	256	227	88.7	85.6
1,000억 원 이하	16	15	93.8	17	16	94.1	83	81	97.6	24	23	95.8	13	9	69.2	90.1
1,000억 원 초과	40	39	97.5	30	29	96.7	25	25	100.0	18	18	100.0	29	28	96.6	98.1

주: 1인당 납부세액공제 적용비율은 각 과세규모별 납부세액공제 적용자를 전체 과세대상자로 나눈 값

자료: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마) 상속 및 증여재산별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 상속세 세율을 조정함에 따라 2025년 기준으로 상속세는 1조 6,549억원, 증여세는 3조 1,705억원 등 총 4조 8,254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상속재산 규모별 과세표준에 개정안에 따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상속세 세수감소액은 1억원 미만 0.8억원에서 500억원 초과 4,266억원 등 총 1조 6,549억원으로 추계됨
 - 증여재산 규모별 과세표준에 개정안에 따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증여세 세수감소액은 1억원 미만 1,151억원에서 500억원 초과 5,117억원 등 3조 1,705억원으로 추계됨

(3) 추계결과

- 상속세 세율을 조정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는 2025년 3조 2,053억원, 2029년 4조 8,254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22조 5,070억원(연평균 4조 5,014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2025년 기준 세율 조정안에 따른 세수추계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자 및 1인당 과세표준 등이 최근 5년간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한 것으로 향후 5년간 동일
 - 다만, 2025년 세수효과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 반영하여 상속세 6/12, 증여세 9/12 적용하여 산정

[표 13] 개정안에 따른 향후 5년간 상속세 및 증여세 감소액 추계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상속세 감소분	8,274	16,549	16,549	16,549	16,549	74,470	14,894
증여세 감소분	23,779	31,705	31,705	31,705	31,705	150,599	30,120
세수감소분 합계	32,053	48,254	48,254	48,254	48,254	225,070	45,014

주: 2025년 세수효과는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기한 반영하여 상속세 6/12, 증여세 9/12 적용하여 산정

나. 일괄공제 인상

(1) 제도개요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① 기초공제 및 자녀공제 등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② 5억원(일괄공제) 중 큰 금액으로 공제
 -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의 합이 3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공제를 적용 받지 않고 일괄공제 적용을 받음
 - 배우자공제의 경우 일괄공제와 병행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 －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기초공제액과 자녀공제 등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
 - 일괄공제액: (현행) 5억원 → (개정안) 10억원

(2) 추계방법

- 일괄공제액 상향조정의 세수효과는 일괄공제 적용대상자의 일괄공제 조정액에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세액감소액을 추계
 - 일괄공제액 적용대상 피상속인을 기초로 각 상속재산 규모별 기초공제 적용대상자를 추정한 후 기초공제액에 각 상속재산 규모별 실효세율을 적용하여 세수효과 추계
- (가) 일괄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 추정
- 최근 5년간 전체 과세대상 피상속인수에서 일괄공제 적용대상 비율을 반영하여 추정한 피상속인수를 일괄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로 가정하여 추계
 - 최근 5년간 과세대상 피상속인수 가운데 일괄공제 적용대상 연평균 비율(93.3%)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 최근 5년간 과세대상 피상속인수 가운데 일괄공제 적용대상 비율의 증감은 일정하지 않으며, 평균 비율은 93.3%을 나타내고 있음

[표 14] 최근 5년간 과세대상 피상속인수 가운데 일괄공제 적용대상 비율

(단위: 명)

구분	전체 과세대상 피상속인수(A)	일괄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B)	일괄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 비율(B/A)
2019년	8,357	7,796	93.3%
2020년	10,181	9,507	93.4%
2021년	12,749	11,883	93.2%
2022년	15,760	14,717	93.4%
2023년	19,944	18,609	93.3%
연평균비율	-	-	93.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및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과세대상 피상속인수는 최근 5년간 전체 피상속인수(연평균 336,365명) 중 과세가 된 피상속인수의 연평균 비중(4.0%)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대상 피상속인(13,398명)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최근 5년간 전체 피상속인수의 증감추세가 일정하지 않아 향후 과세대상 피상속인수의 증감추세도 일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연평균 비중(4.0%) 적용

[표 15] 최근 5년간 과세대상 피상속인수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피상속인수	과세 피상속인수	과세미달 피상속인수
2019년	345,290 (100.0)	8,357 (2.4)	336,933 (97.6)
2020년	351,648 (100.0)	10,181 (2.9)	341,467 (97.1)
2021년	344,184 (100.0)	12,749 (3.7)	331,435 (96.3)
2022년	348,159 (100.0)	15,760 (4.5)	332,399 (95.5)
2023년	292,545 (100.0)	19,944 (6.8)	272,601 (93.2)
연평균인원 / 연평균 비중 인원 등	336,365 (100.0)	13,398 (4.0)	322,967 (96.0)

주: ()는 전체 피상속인수 대비 비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과세대상 일괄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는 2025년 이후 12,502명으로 가정하여 추계
 - 위에서(표14) 추정한 과세대상 피상속인수 13,398명에 일괄공제 적용대상 비율(93.3%)을 반영하여 일괄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 추정

□ 상속재산 규모별 일괄공제 적용대상 피상속인수 비율 추정

- 상속재산 규모별 일괄공제 피상속인수 비율은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규모별 연평균 비율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규모별 연평균 일괄공제 피상속인수비율을 살펴보면, 10억원 이하 구간 28.7%에서 500억원 초과 0.2%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표 16]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규모별 일괄공제 적용 대상 피상속인수 및 비율
(단위: 명, %)

상속재산 과세가액 규모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비율
10억원 이하	2,220 (28.5)	2,878 (30.3)	3,363 (28.3)	4,149 (28.2)	5,219 (28.0)	28.7
20억원 이하	3,299 (42.3)	4,107 (43.2)	5,247 (43.5)	6,506 (44.2)	7,838 (42.1)	43.2
30억원 이하	1,112 (14.3)	1,190 (12.5)	1,558 (13.1)	1,924 (13.1)	2,574 (13.8)	13.4
40억원 이하	452 (5.8)	477 (5.0)	628 (5.3)	774 (5.3)	1,189 (6.4)	5.5
50억원 이하	201 (2.6)	240 (2.5)	336 (2.9)	422 (2.8)	602 (3.2)	2.8
100억원 이하	359 (4.6)	415 (4.4)	491 (4.2)	633 (4.1)	783 (4.2)	4.3
500억원 이하	142 (1.8)	188 (2.0)	241 (2.0)	288 (2.0)	369 (2.0)	2.0
500억원 초과	11 (0.1)	12 (0.1)	19 (0.2)	21 (0.2)	35 (0.2)	0.2
합계	7,796 (100.0)	9,507 (100.0)	11,883 (100.0)	14,717 (100.0)	18,609 (100.0)	100.0

주: ()는 전체 일괄공제 적용 피상속인 수 가운데 과세가액 규모별 일괄공제 적용 피상속인수 비율
자료: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상속재산 규모별 실효세율의 추정

- 상속재산 규모별 실효세율은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나눈 값으로 추정하였으며,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규모별 연평균액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규모별 연평균 실효세율은 10억원 이하 10.8%에서 500억원 초과 43.1%로 나타남

[표 17] 최근 5년간 상속재산 규모별 실효세율 추이

(단위: 억원,%)

상속재산 과세가액 규모	2019			2020			2021			2022			2023			연평균 실효세율
	과세표 준액(A)	총결정 세액(B)	실효세 율(B/A)	과세표 준액(A)	총결정 세액(B)	실효세 율(B/A)	과세표 준액(A)	총결정 세액(B)	실효세 율(B/A)	과세표 준액(A)	총결정 세액(B)	실효세 율(B/A)	과세표 준액(A)	총결정 세액(B)	실효세 율(B/A)	
10억원 이하	417,955	40,507	9.7	518,653	56,094	10.8	640,338	70,788	11.1	805,131	94,658	11.8	10,748	1,144	10.6	10.8
20억원 이하	15,097	2,520	16.7	18,163	3,087	17.0	24,060	4,186	17.4	29,312	5,134	17.5	35,192	6,122	17.4	17.2
30억원 이하	12,122	2,744	22.6	13,089	3,019	23.1	17,512	4,071	23.2	21,315	5,105	24.0	28,858	6,754	23.4	23.3
40억원 이하	8,052	2,140	26.6	8,405	2,200	26.2	11,538	3,112	27.0	14,398	3,926	27.3	21,632	5,903	27.3	26.9
50억원 이하	5,017	1,425	28.4	5,841	1,725	29.5	8,400	2,446	29.1	10,558	3,199	30.3	15,424	4,622	30.0	29.5
100억원 이하	15,421	5,155	33.4	17,290	5,792	33.5	21,070	7,375	35.0	26,975	9,323	34.6	33,984	11,735	34.5	34.2
500억원 이하	18,835	7,083	37.6	26,036	10,485	40.3	33,592	13,727	40.9	38,323	15,618	40.8	51,370	20,647	40.2	40.0
500억원 초과	16,782	5,854	34.9	33,103	15,128	45.7	31,267	12,834	41.0	314,285	148,957	47.4	142,281	65,870	46.3	43.1

자료: 국세청 답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상속재산규모별 일괄공제액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효과

- 상속세 일괄공제액 상향조정(5억원=10억원-5억원)에 따른 세수감소액은 2025년 기준 1조 1,424억원으로 나타남
 - 2025년 기준 각 상속재산 규모별 일괄공제 증가액(5억원)에 실효세율(표 5)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수감소액은 10억원 이하 1,935억원에서 500억원 초과 41억원 등 총 1조 1,424억원으로 추계됨

다. 추계결과

-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2025년 5,712억원, 2029년 1조 1,424억원 등 5년간 총 5조 1,408억원(연평균 1조 28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최근 5년간 상속세 과세대상 및 일괄공제액 적용대상자의 증감이 일정하지 않아 연평균 적용대상 등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계

[표 18] 향후 5년간 상속세 일괄공제액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 감소액 추계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상속세 감소액	5,712	11,424	11,424	11,424	11,424	51,408	10,282

주: 2025년은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을 감안하여 6개월분 반영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2과	최천규	백경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천규	02-6788-4838	choi1009@assembly.go.kr